※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별지 1호 서식]
[別紙1号書式]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農漁業者健康保険料支援申請（確認）書

접수번호 受付番号	접수일 受付日	처리기한 : 処理期限 :	14일 이내 14日以内

※ 아래의 건강보험료 신청 시 유의사항,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以下の健康保険料申請時の留意事項、作成方法等を参考に記入してください。

농어업인 대상자 農漁業者である対象者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주소 住所		전화번호 電話番号	
	세대주와의 관계 世帯主との関係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시 작성 ＊健康保険料支援申請時に作成	휴대전화 携帯電話番号	
농어업인 확인 農漁業者の確認	농어업인 해당일 農漁業者該当日	년 월 일(□ 경영체등록일, □ 기타 읍·면·동 확인일) 年 月 日（□経営体登録日）、□その他邑・面・洞確認日）		
	농어업인 구분 農漁業者の区分	□ 농업인(축산업, 임업, 법인종사자 포함), □ 어업인(법인종사자 포함) □農業者（畜産業、林業、法人従事者を含む）、□漁業者（法人従事者を含む）		
	농어업 규모 農漁業の規模	농지 ㎡, 어선 톤, 양식 ha 農地 ㎡、漁船 トン、養殖 ha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農水産物年間販売額		연간 농어업 종사일 年間の農漁業従事日	
	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法人に1年以上継続雇用されている者	□ 영농(어)조합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일 □ 営農（漁）組合法人に雇用されている者の雇用日数： 日 ＊ 다만, 농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 종사자 ＊ 但し、農水産物の出荷・流通・加工・輸出活動の従事者 □ 농(어)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일 □ 農（漁）業会社法人に雇用されている者の雇用日数： 日 ＊ 다만, 농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 종사자 ＊ 但し、農水産物の流通・加工・販売活動の従事者 ※ 법인에서 고용분야가 명기된 고용기간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할 것 ※ 法人から雇用分野が明記されている雇用期間資料の発行を受け、添付すること		

농어촌 요건 확인 **農漁村の要件の確認** (읍·면지역 외 지역 농어촌 요건 검토) (邑・面地域以外の地域の農漁村要件に対する検討)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農業・農村及び食品産業基本法第3条第5号ロ. による農村地域（イ~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農漁村住民の保健福祉増進のための特別法第33条(準農漁村に対する特例) (二~ホ)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イ. 「地方自治法」第2条第1項第2号か、「済州特別自治道の設置及び国際自由都市造成のための特別法」第15条に基づく市の地域のうち、洞地域は「国土の計画及び利用に関する法律」第36条第1項によって指定された住居・商業・工業地域以外の用途の地域	□ 맞음, □ 該当する、 □ 아님 □ 該当しない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ロ. 「地方自治法」第2条第1項第2号及び第2条第2項による自治区（「首都圏整備計画法」第2条第1号に該当する自治区は除く）の地域のうち、洞地域は「国土の計画及び利用に関する法律」第36条第1項によって指定された以下の各目の用途の地域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 녹지지역 ・都市地域の緑地地域のうち生産・保全緑地地域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管理地域のうち生産・保全管理地域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農林・自然環境保全地域 ※ 농어업인 지원(0~28%)만 가능, 농어촌경감(22%)은 해당안됨 ※ 農漁業者支援（0～28%）のみ可、農漁村軽減（22%）は該当しない	□ 맞음, □ 該当する、 □ 아님 □ 該当しな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ハ. 「開発制限区域の指定及び管理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第2条第3項第2号に基づき、2002年8月14日以後開発制限区域から解除され、第1種一般住居地域に指定された集団集落地区地域 ※ 농어업인 지원(0~28%)만 가능, 농어촌경감(22%)은 해당안됨 ※ 農漁業者支援（0～28%）のみ可、農漁村軽減（22%）は該当しない	□ 맞음, □ 該当する、 □ 아님 □ 該当しない
	㉱ ㉮,㉯,㉰외의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개발제한구역·특별관리지역 二. イ、ロ、ハ以外の地域で、農業振興地域、開発制限区域、特別管理地域	□ 맞음, □ 該当する、 □ 아님 □ 該当しない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ホ-1. 「開発制限区域の指定及び管理に関する特別措置法」第3条に基づき、開発制限区域から解除されたが、周辺の農耕地が開発制限区域又は特別管理地域として存置する地域のうち、以下の何れかに該当する地域	□ 맞음, □ 該当する、 □ 아님 □ 該当しない

	(다만, 특별관리지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지역에 거주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但し、特別管理地域として存置する地域は、特別管理地域の指定前に当該地域に居住して健康保険料の支援を受けていた農漁業者を対象とする)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第1種専用住居地域 · 第1種一般住居地域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保全緑地地域 · 自然緑地地域	※ 맞음에 체크한 경우 ㉮-2항목에 존치, 비존치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함 ※「該当する」にチェックした場合、項目ホ－2の存置か不存置に必ずチェックすること
	㉮-2 거주지 주변 농경지의 개발제한구역 또는 특별관리지역 존치 경우 구분 ホ－2. 居住地周辺の農耕地が開発制限区域又は特別管理地域として存置する場合の区分	□ 존치, □ 비존치 □ 存置、□ 不存置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農漁村住民の保健福祉増進のための特別法」第27条に基づき、上記の通り申請しま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포함)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農漁業者の生活の質の向上及び農漁村地域の開発促進に関する特別法」施行令第18条に基づき、事業申請に関連する個人情報（固有識別番号を含む）の取得・利用・提供に同意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申請人（加入者） (署名又は印)

확인자(읍·면·동장) (인)

確認者（邑・面・洞長） (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国民健康保険公団理事長 殿

첨부서류 添付書類	없음 なし	수수료 없음 手数料なし

건강보험료 신청 시 유의사항

健康保険料申請時の留意事項

1. 주소지가 읍·면지역이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확인자 확인 없이 공단으로 직접 신청(유선) 가능합니다.
1. 住所が邑・面地域であり、農漁業経営体登録情報を登録した農漁業者は、確認者の確認を受けずに公団に直接申請（有線）できます。
2. 농어촌 요건 확인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동장이 확인합니다.
2. 農漁村要件の確認は、申請人の住所を管轄する自治体の洞長が確認します。

작성방법
作成方法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1. 氏名、住民登録番号及び住所は、住民登録上の内容を記入してください。
2.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어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하십시오.
2. 農漁業関連の組合法人か会社法人に1年以上雇用され、農漁業者としての認定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関連法人から雇用日数に関する資料の発給を受けて添付してくださ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裏面)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この確認書は、以下のように処理され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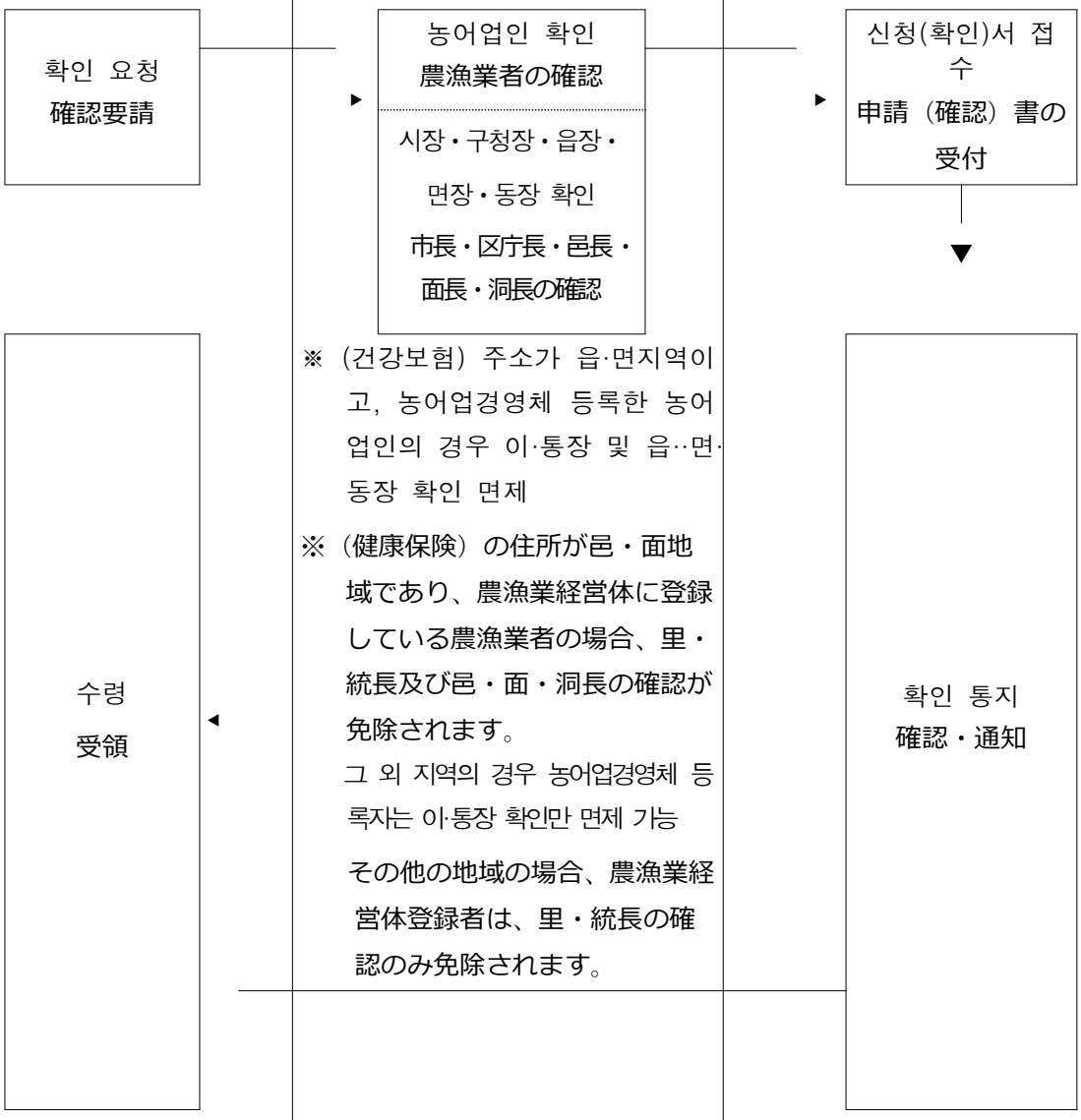

《 농어업인 구분 》
《 農漁業者の区分》

농업인(축산업인 및 임업인 포함) 農業者（畜産業者及び林業者を含む）	어업인 漁業者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합니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1千平方メートル以上の農地（「農漁村整備法」第98条に基づき、非農業者が分譲を受けたり借りた農漁村住宅等に付属する農地は除く）を経営したり耕作する者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漁業経営による水産物の年間販売額が120万ウォン以上の者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農業経営による農産物の年間販売額が120万ウォン以上の者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年間90日以上農業に従事する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農漁業経営体の育成及び支援に関する法律」第16条第1項に基づき設立された営農組合法人の農産物の出荷・流通・加工・輸出活動に1年以上継続して雇用されている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農漁業経営体の育成及び支援に関する法律」第19条第1項に基づき設立された農業会社法人の農産物の流通・加工・販売活動に1年以上継続して雇用されている者

※ 농업

※ 農業

-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農作物栽培業：食料作物栽培業、野菜作物栽培業、果実作物栽培業、花き作物栽培業、特用作物栽培業、薬用作物栽培業、きのこ栽培業、養蚕業及び種子・苗木栽培業（林業用の種子・苗木栽培業は除く）
-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합니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畜産業：動物（水生動物は除く）の飼育業・増殖業・孵化業及び種畜業
-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합니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林業：育林業（自然休養林・自然樹木園の造成・管理・運営業を含む）、林産物の生産・採取業及び林業用の種子・苗木栽培業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年間60日以上農業に従事する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農漁業経営体の育成及び支援に関する法律」第16条第2項に基づき設立された営漁組合法人の水産物の出荷・流通・加工・輸出活動に1年以上継続して雇用されている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農漁業経営体の育成及び支援に関する法律」第19条第3項に基づき設立された漁業会社法人の水産物流通・加工・販売活動に1年以上継続雇用してされている者

※ 어업

※ 漁業

-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水産動植物を捕獲・採取又は養殖する産業、塩田において海水を自然蒸発させて製造する塩を生産する産業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作成方法及び留意事項》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1. 氏名、住民登録番号及び住所は、住民登録上の内容を記入してください。

2.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농어업인 확인서에 첨부하십시오.

2. 農漁業関連の組合法人や会社法人に1年以上雇用され、農業者として認定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当該法人から雇用日数に関する資料の発給を受け、農漁業者確認書に添付してください。

3.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해당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農漁業者の確認は、土地の所在地又は居住地の当該市長・区庁長・邑長・面長又は洞長の確認を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가 위임된 경우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

※「地方自治法」第104条に基づく地方自治体の条例や規則により事務が委任された場合は、委任を受けた機関の長